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

불기2555(2011) 7월 5일 제정·공포

제 1조 (목적) 이 영은 포교법 제12조에 의거 본종 포교와 관련하여 분야별, 지역별 포교활동 진흥을 위한 본종 전법중심도량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종 포교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전법중심도량이라 함은 종단 포교의 분야별, 지역별 거점사찰로 종단에서 지정한 포교목적 달성을 위해 진력하며, 이를 위해 종단차원의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을 추진하는 도량을 말한다.

제 3조 (전법중심도량 지정기준 등) ① 전법중심도량의 지정은 모범사찰과 전략사찰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별 1개소를 기준으로 150개소 내지 300개소 이내로 지정한다.

② 모범사찰의 지정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찰예산 및 포교예산 책정비율
2. 지정분야 포교를 위한 시설 및 지도인력편성 현황
3. 지정분야 포교를 위한 사업현황
4. 지정분야별 포교지침의 부합 여부

③ 전략사찰의 지정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역의 종교현황 및 당해 계층의 인구수
2. 지정분야 포교를 위한 시설 및 지도인력 편성 여부
3. 지정분야 포교사업을 위한 실행의지 및 서약 여부
4. 지정분야별 포교지침의 시행 서약 여부

④ 지정분야별 포교의 사업과 지침은 포교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전법중심도량 신청절차) 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의 주지는 소정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소속 교구본사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교원에서 직접 선정하여 심사하거나 직할교구 관할 사찰의 경우에는 교구본사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제 5조 (전법중심도량 지정 심사위원회) ① 전법중심도량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로서 전법중심도량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심사위원 6인과 위촉직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포교원장으로 한다.

제 6조 (심사위원)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심사위원
 - 가. 포교원장
 - 나. 총무부장
 - 다. 기획실장
 - 라. 포교부장
 - 마. 포교연구실장
 - 사.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장

2. 위촉직 심사위원
 - 가. 포교원장이 포교원회의를 거쳐 위촉한 3인
 - 나. 위촉직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조 (심사위원회의 소집) 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조 (심사위원회의 의결)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조 (전법중심도량 심사 및 지정절차) ① 전법중심도량을 지정코자 할 때 포교원장은 종단기관지에 신청공고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청방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 3조의 기준에 의하여 전법중심도량 지정을 신청한 사찰 또는 포교당에 대하여 접수 마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전법중심도량을 지정한 때에는 포교원장은 종단기관지 게재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종단 내외에 공고한다.

제 10조 (전법중심도량의 지정기간) 전법중심도량의 지정기간은 2년이며,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 11조 (전법중심도량의 지정해제) ① 포교원장은 지정사찰에 대해 지정사유가 상실되었거나 당해 포교활동이 극히 미비한 때 또는 이 영에서 지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법중심도량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조 1항에 의해 지정해제 되는 도량이 지정기간 중 종단예산에서 시설비 등의 자산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종단에 반납하여야한다.

제 12조 (전법중심도량의 의무) 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된 사찰 또는 포교당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지정 당시 기준 및 요건을 유지할 의무

2. 당해 분야 포교사업에 매진할 의무
- 3. 당해 분야 포교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4. 포교원에서 소집하는 중심도량 회의 참석

제 13조 (전법중심도량에 대한 종단 지원 등) 포교원은 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된 사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종단에서 개발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적 지원
2. 사찰과 연계한 종단 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지원
3. 종단에서 제작한 분야별, 지역별 전법중심도량 간판을 지정사찰에 게시
4. 중심도량의 중요 지역사업 또는 불사 시, 종단 포교사의 자원봉사 지원
5. 기타 포교원에서 정하는 종단차원의 지원

제 14조 (전법중심도량에 대한 감독) 포교원은 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된 사찰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당해 포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 15조 (전법중심도량에 대한 사무) 전법중심도량의 업무는 포교원 포교국에서 담임한다.

제 16조 (전법중심도량 주지에 대한 특례) 전법중심도량 주지가 2년 이상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포교원장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의 심의위원회에 전법중심도량활동 결과에 대한 반영을 요청한다.

제 17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교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 전법도량이나 어린이.청소년포교중심도량으로 지정된 사찰은 이 영에 의해 전법중심도량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종령 및 규칙의 폐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1997년 5월 19일 제정된 전법도량지정규정과 포교원회의 의결로 2008년 5월 21일 제정된 어린이.청소년포교중심도량지정및육성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